

-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소 방 청 장

I. 시험일시

시험일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23. 3. 18.(토)	공채	10:00~11:15 (75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경채	10:00~11:05 (65분)	일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화학) 소방사는 화학개론, 소방교는 소방관계법규로 필기시험 응시

※ 09:30:01 시험장 주 출입구 폐쇄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는 자진 신고하여야 별도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8P 참고】

II. 시도별 시험장소 (첨부파일 2 확인)

연번	시 도	시험장	소재지	연번	시 도	시험장	소재지
1	중앙	1개소	공주	10	경기	8개소	오산, 평택, 수원 성남, 안양, 구리, 고양
2	서울	5개소	서울	11	강원	2개소	춘천
3	부산	4개소	부산	12	충북	3개소	청주
4	대구	3개소	대구	13	충남	2개소	공주
5	인천	3개소	인천	14	전북	4개소	전주
6	광주	2개소	광주	15	전남	2개소	순천
7	대전	2개소	대전	16	경북	3개소	안동
8	울산	2개소	울산	17	경남 창원	3개소	진주
9	세종	1개소	세종	18	제주	1개소	제주

※ 첨부파일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전국)』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한 시도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시험실은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

Ⅲ. 준비물

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 신분증 미지참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나. 응시표: '23. 3. 9.(목) 14:00 (119고시 누리집* 출력)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다. 필기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응시자 본인 준비)

Ⅳ. 응시자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기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첨부파일 2 참고】 통과 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09:30부터 답안지 작성요령 및 응시자 준수사항이 방송되며, 화장실 이용 등으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자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30:00까지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09:30:00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

- ▶ 시간 기준: 09:30:01 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 바.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지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아. 시험관련 휴대전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답안지 작성 및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 나.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적색펜,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면 무효(미마킹) 답안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 없이 예비로 마킹한 경우 중복 답안(이중 마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특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PDA,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테블릿 PC,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 다만, 돋보기, 귀마개(이어플러그),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해당 교실 시험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2)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제출한 답안지는 정답안지로 인정)

카.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 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장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19고시 및 소방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문제지 배부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 답안지에 성명, 필적확인란, 생년월일, 응시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출제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가. 답안공개: '23. 3. 18.(토) 16:00 / 119고시

나. 이의제기: '23. 3. 18.(토) 16:00~3. 19.(일) 24:00*

* 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문의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1) 방법: 119고시에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제출

↳ 119고시 → 문제/정답 → 문제/정답 이의제기

2)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5 채점 및 이의제기

가. 성적공개 및 이의제기

1) 성적공개: '23. 4. 10.(월) 14:00~ (119고시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2) 이의제기: '23. 4. 10.(월) 14:00~24:00

가) 방 법: 119고시에서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조회

나) 이의제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합격/성적조회 → 이의제기신청 → 이의제기 과목 선택/기타 의견 서술 → 저장/제출

나. 이의제기 답변: '23. 4. 13.(목)까지

6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합격자 공고: '23. 4. 14.(금) 14:00 / 119고시

나.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때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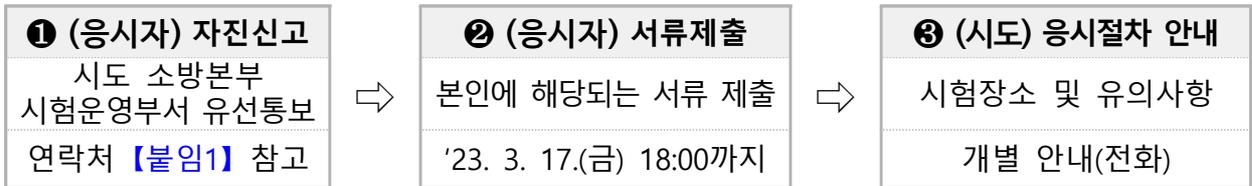
분야	공채		경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11~20명	2.5배수	2명	6명
			3명	8명
	21~50명	2배수	4명	9명
			5명	10명
51명 이상	1.5배수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다. 합격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함

라. 동점자 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V.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

- 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 시험운영부서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확진자(격리대상자) 시험응시 절차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1. (대 상) **필기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2023. 3. 13.(월) 09:00 ~ 3. 17.(금) 18:00까지**

※ '23. 3. 17.(금) 18: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본인이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 시험운영부서에 유선통보(【붙임1】 9P 참고)** 및 관련 서류 **e-메일 제출(【붙임1】 9P 참고)**

4. (제출서류)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서식1】 15P**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2】 16P**
- ③ (병원 등 시설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병원 등 시설 응시 불가)
확진(병원 등 시설)	①, ②, ③	
자가격리자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①, ②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 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화번호 및 주소 ※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는 아래 이메일로 제출

시 도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rok409@korea.kr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ssingrae@seoul.go.kr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lion0715@korea.kr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jtg8655@korea.kr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medic108@korea.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sky2898@korea.kr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dcorea@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sfscuba32@korea.kr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bloodkang@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재개발팀	031-329-0321~7 bbankar@korea.kr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ehdbs24@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3 lovesenda@korea.kr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www.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13 beerthree81@korea.kr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shyguy963@korea.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www.sobang.kr/index.sko)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kms399@korea.kr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2 054-880-6155 babyjj@korea.kr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litaixi@korea.kr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imsun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3 litaixi@korea.kr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 **시험과목**

구 분		1과목	2과목	3과목	
공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경채	일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구급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소방사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소방교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정보통신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문제지 편철 순서**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공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
경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응급처치학개론		

번호	주요 실수 유형		
☞ 답항 '미판독 또는 중복판독'으로 무효처리될 수 있음			
1	지정되지 않은 펜으로 답항을 표기한 경우	연필	
		볼펜	
		형광펜	
		적색볼펜	
2	잘못된 방식으로 답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표기한 경우	점	
		사선	
		√	
3	답항의 숫자가 보일 정도로 농도가 얇은 사인펜으로 표기한 경우		
☞ 답항 '중복판독'으로 무효처리될 수 있음			
4	예비마킹을 하고, 다른 답항에 정답 표기한 경우		
5	부주의한 실수로 특정 문항에 두 개의 답항을 표기한 경우		
6	답항을 너무 크게 칠해 다른 답항에 번진 경우		
7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불완전하게 처리한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나.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응시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외출 전 준비사항〉

-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외출 사실 통보(이동경로 및 수단)합니다.
- 외출 전,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 보건소 안내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 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 종량제 봉투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합니다.

〈외출 중 주의사항〉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상시 상기하여 주의합니다.
-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 시험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주의사항〉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로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자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서식 1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휴 대 전 화	- -	응 시 번 호	
공·경채 구분		응 시 분 야	
현 주소지			
격 리 기 간		관 할 보 건 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 청 사 유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공통)
- ③ 의사 소견서(병원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별도시험을 신청한 모든 응시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 (병원 등 시설 응시 불가)
확진(병원·생활치료)	①, ②, ③	
자가격리자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 시험용)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